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안 설명

□ 존경하는 임만균 위원장님과 선배 동료 위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용균 의원입니다.

□ 본 의원 외 15명이 공동발의한 「서울특별시 도시공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 설명드리게 된 것을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 최근 도시공원 내 다양한 행사 개최가 증가하고 있으나, 상행위 규제로 인해 행사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본 조례 개정을 통해 공익적인 행사 개최를 지원하여 공익적 행사의 활성화와 시민들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공원관리청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사를 도시공원에서 개최하는 경우 일정 범위 내 상행위가 가능하도록 허용하여 공익적 행사의 원활한 개최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가. 공원관리청이 공익에 부합한다고 판단하여 허용한 행사의 경우에는 도시공원의 관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에서 각 호의 범위에 따라 허용할 수 있도록 함(안 제22조제2항 신설).

나.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이 주최·주관하는 행사의 상행위(안 제22조제2항제1호 신설).

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문화·예술행사에 부대하여 이루어지는 상행위(안 제22조제2항제2호 신설).

라. 그 밖에 모든 시민에게 문화·예술·체험·여가 등의 기회제공 향상에 기여한다고 판단되는 행사의 상행위(안 제22조제2항제3호 신설).

기타 세부적인 내용은 의석에 배부해 드린 조례안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쪼록 존경하는 위원님 여러분들의 현명한 판단으로, 원안대로 의결하여 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